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라. 모자형구조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u>자투자신탁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u> (이하 생략) (삭제)	(삭제)
제 2 부. 12.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생략)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⑧ (생략) 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현행과 같음)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⑧ (현행과 같음) 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p>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p>	<p>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전날의 최종시가</u></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2 부.13.다. 모두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p><u>다. 모두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연간, %)</u></p> <p><u>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 [UH](주식-재간접형)</u></p> <p>(이하 생략) (삭제)</p>	(삭제)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p>	<p>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p>-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p>
--	--	--	---

		<p>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p>
--	--	--	--

			<p>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b>라. 운용자산규모</b>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라. 모자형구조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u>자투자신탁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u> (이하 생략) (삭제)	(삭제)
제 2 부. 12.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생략)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⑧ (생략) 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현행과 같음)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⑧ (현행과 같음) 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p>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p>	<p>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전날의 최종시가</u></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2 부.13.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p><u>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연간, %)</u></p> <p><u>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u></p> <p>(이하 생략) (삭제)</p>	(삭제)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p>	<p>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p>-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p>
--	--	--	---

		<p>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p>
--	--	--	--

			<p>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b>라. 운용자산규모</b>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 (채권)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라. 모자형구조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자투자신탁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이하 생략) (삭제)	(삭제)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b>17.42%</b>	수익률 변동성 <b>22.70%</b>



<p>제 2 부.11.가.매입</p>	<p>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p>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p> <p>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p>	<p>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②(생략)</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④~⑧ (생략)</p> <p>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p> <p>②(현행과 같음)</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p> <p>④~⑧ (현행과 같음)</p> <p>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p>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전날의 최종시가</u>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2 부.13.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연간, %)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 [UH](주식-재간접형) (이하 생략) (삭제)	(삭제)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p>	<p>12%</p>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p> <p>-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p>
--	--	--	--

		<p>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p>
--	--	--------------------------	--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 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라. 모자형구조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자투자신탁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이하 생략) (삭제)	(삭제)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b>16.39%</b>	수익률 변동성 <b>20.81%</b>
제 2 부. 11. 가. 매입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p>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u></p> <p><u>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b>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b></p>	<p><b>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b></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②(생략)</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④~⑧ (생략)</p> <p>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u>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p> <p>②(현행과 같음)</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u>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p> <p>④~⑧ (현행과 같음)</p> <p>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u>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u></p> <p>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전날의 최종시가</u></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2 부.13.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연간, %)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이하 생략) (삭제)	(삭제)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p>-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p>
--	--	--	---

		<p>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p>
--	--	---

			<p>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 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생략	<p>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p>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b>0.71%</b>	수익률 변동성 <b>0.75%</b>
제 2 부.11.가.매입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p>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 또한</p>

		<p>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p> <p>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u>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 거래된 최종시가</p> <p>②(생략)</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p> <p>②(현행과 같음)</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p>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p> <p>결산일 기준 업데이트</p>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li> <li>※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li> <li>-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ul>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6 단계 등급 체계중 5 등급(낮은위험)	6 단계 등급 체계중 4 등급(보통위험)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6 단계 등급 체계중 2 등급(높은위험)	6 단계 등급 체계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5등급 낮은 위험 -> 4등급 보통 위험)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생략) 기타 유의사항: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주식)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른 손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다소높은위험)의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현행과 같음) 기타 유의사항: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주식)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른 손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높은위험)의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6 단계 등급 체계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투자위험등급 : 6 단계 등급 체계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수익률 변동성 : <u>4.12%</u>	수익률 변동성: <u>7.10%</u>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변경전 위험등급 : 5 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 4 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제 2 부.11.가.매입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p> <p>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p>
제 2 부.12.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②(생략)</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p> <p>②(현행과 같음)</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p>

<p>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결산 업데이트</p>	<p>생략</p>	<p>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p>
<p>제 2 부.14.나. 과세</p>	<p>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p>

			<p>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 합투자기구의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6 단계 등급 체계중 5 등급(낮은위험)	6 단계 등급 체계중 4 등급(보통위험)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 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한도내에 퇴직연금이납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 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 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 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

		<p><u>입하는금액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u></p>	<p><u>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 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u></p>
--	--	---	---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2등급 높은 위험)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b>6 단계 등급 체계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b>  수익률 변동성 : <u>12.56%</u>	투자위험등급 : <b>6 단계 등급 체계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b>  수익률 변동성 : <u>19.64%</u>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변경전 위험등급 : 3 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 2 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제 2 부. 11. 가. 매입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p>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u></p> <p><u>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②(생략)</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p> <p>②(현행과 같음)</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p>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p> <p>결산일 기준 업데이트</p>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ul>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li> </ul>
--	--	---	--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 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6 단계 등급 체계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	6 단계 등급 체계중 2 등급(높은위험)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2등급 높은 위험)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b>6 단계 등급 체계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b>  수익률 변동성 : <u>11.25%</u>	투자위험등급 : <b>6 단계 등급 체계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b>  수익률 변동성 : <u>20.21%</u>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변경전 위험등급 : 3 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 2 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제 2 부. 11. 가. 매입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p>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u></p> <p><u>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②(생략)</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p> <p>②(현행과 같음)</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p>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p> <p>결산일 기준 업데이트</p>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ul>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li> </ul>
--	--	---	--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p>
--	--	--	---

			<p>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 합투자기구의	결산 업데이트	생략	<p>운용현황</p> <p>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운용전문인력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 낮은 위험 -> 4등급 보통 위험)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생략) 기타 유의사항: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주식)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른 손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다소높은위험)의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현행과 같음) 기타 유의사항: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주식)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른 손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높은위험)의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6 단계 등급 체계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투자위험등급 : 6 단계 등급 체계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수익률 변동성 : <u>4.04%</u>	수익률 변동성 : <u>6.99%</u>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변경전 위험등급 : 5 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 4 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제 2 부.11.가.매입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p> <p>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u>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b>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b>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u>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p>
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②(생략)</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p> <p>②(현행과 같음)</p> <p>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동종유형 비용 등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ul>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p>

			<p>[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li> </ul>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별첨 1.3.모집 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p>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